

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

급하다고 잠깐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,
꼭 비워두세요!



근거법령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」

이용대상

‘장애인전용
주차가능 표지’
부착된 차량



과태료 부과대상 (예시)



- 같은 건물에 장애인이 살지 않아도,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외에는 주차하지 마시기
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(032-560-3065, 3066)로 문의바랍니다.